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9호서식] <개정 2023. 12. 14.>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
허가번호 제 호

멸종위기 야생생물 [ ]포획 [ ]이식 [ ]보관 [ ]채취 [ ]가공 [ ]훼손 [ ]방사 [ ]유통 [ ]고사 허가증

신청인	상호(성명)	연락처
	주소	
	조사 또는 사업명(해당하는 경우)	

	학명	멸종위기 등급	수량	목적・용도	지역
허가사항					

허가기간	
허가조건	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[ ]포획 [ ]채취 [ ]방사 [ ]이식 [ ]가공 [ ]유통 [ ]보관 [ ]훼손 [ ]고사를 허가합니다.

년 월 일

유 역 환 경 청 장
(지 방 환 경 청 장)

직인

유의사항

1.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・채취 등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증을 휴대해야 합니다.
2. 포획・채취 등을 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5일 이내에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.
3. 폭발물・덫・창애・올무・함정・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・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방법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・채취 등을 하지 못합니다.

210mm×297mm(백상지 120g/㎡)

(뒤쪽)

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·채취 등 신고명세					
일시	학명	멸종위기 등급	수량	포획·채취 등의 장소	포획·채취 등의 방법

210mm×297mm(백상지 120g/㎡)